

**행정처분의 기준** (제9조의2, 제19조, 제42조, 제48조 및 제53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회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허가취소, 등록취소, 지정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,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(법 제13조제3항제1호·제4호,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11호·제12호, 제48조제6항제1호·제3호·제6호, 제54조제1항제1호·제4호·제12호, 제61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안전진단대상사업자 또는 선박소유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으로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3년 이상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
- 4)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처분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

소상공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그 처분이 허가취소, 등록취소 또는 지정취소(법 제13조제3항제1호·제4호,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·제11호·제12호, 제48조제6항제1호·제3호·제6호, 제54조제1항제1호·제4호·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 다만,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.

- 1)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
- 2)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·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

## 2.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

### 가.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1호	허가취소			
2) 공사나 작업이 부진하여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2호	경고	허가취소		
3) 허가를 할 때 붙인 허가조건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3호	경고	업무(전부 또는 일부) 정지 3개월	업무(전부 또는 일부) 정지 6개월	허가취소
4)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사 또는 작업을 계속한 경우	법 제13조 제3항제4호	허가취소			

### 나. 안전진단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,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1호	등록취소			
2)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2호	등록취소			
3) 법 제19조제2항 전단에 따른	법	등록취소			

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제23조제1항 제3호				
4) 법 제1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4호	개선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5)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. 다만, 법인의 대 표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.	법 제23조제1항 제5호	등록취소			
6)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 · 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 니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6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	
7)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휴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7호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8)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폐업신고 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7호	경고	등록취소		
9) 법 제23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 여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12호	등록취소			
10)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 석 또는 진술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8호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1)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 입·검사·확인·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9호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2)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 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 를 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10호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3)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	법 제23조제1항 제11호	등록취소			

다.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 반 사 항	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	법 제48조제6항 제1호	지정취소			
2)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가) 조직·인원 및 사무소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법 제48조제6항 제2호	개선명령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	나) 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격에 관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	개선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	다) 그 밖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		개선명령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3)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		법 제48조제6항 제3호	지정취소			
4) 법 제48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		법 제48조제6항 제4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2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5) 법 제48조제8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		법 제48조제6항 제5호	경고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
6)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대행업무를 계속한 경우		법 제48조제6항 제6호	지정취소			

라. 안전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			1차위반	2차위반	3차위반	4차위반
1)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		법 제54조제1항 제1호	등록취소			
2) 법 제5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		법 제54조제1항 제2호	개선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
3) 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	가) 법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	법 제54조제1항	영업정지 1개월	등록취소		
	나) 그 밖의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	제3호	개선명령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4) 법인의 대표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4호		등록취소			
5) 안전관리체제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5호	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	
6)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·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6호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	
7)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7호		경고	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
8) 법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7호		경고	등록취소		
9)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8호	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0) 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·검사·확인·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9호	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1)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10호		경고	영업정지 3개월	영업정지 6개월	
12) 법 제5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54조제1항 제11호		경고 또는 영업정지 1개월	영업정지 3개월	등록취소	
13)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안전관리대행업의 영업	법 제54조제1항		등록취소			

을 계속한 경우	제12호				
----------	------	--	--	--	--

마. 선박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	법 제61조의5제1항제1호	자격취소		
2) 법 제6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	법 제61조의5제1항제2호	자격취소		
3) 법 제61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61조의5제1항제3호	자격취소		
4)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61조의5제1항제4호	자격정지 180일	자격정지 1년	자격정지 2년
5)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61조의5제1항제5호	자격정지 2년	자격정지 3년	자격취소